

예산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- 검토 보고 -

□ 제안이유

-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, 해외동포, 외국인등에게 명예군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보다 수준높은 예산군민의 위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명예군민증의 수여자격(안 제2조)
- 수여대상자 결정(안 제3조)
- 명예군민증의 취소(안 제6조)

□ 관련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5조

□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정에 공로가 있는 출향인, 해외동포 등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예산군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수준높은 위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

- 제2조(수여자격)에 있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판단 심사숙고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전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
-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예산군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중요하다고 보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